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00
----------	------------

제안일자 : 2025년 2월 26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6조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소속 자치단체명의 표기 오류가 있어 일부 자구수정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소속 자치단체명의 표기 오류를 수정함(안 제6조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제5호 중 “전북특별자치도 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서울특별시 자원통합관리센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전담 조직의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u>전북특별자치도 자원통합관리센터</u>의 설치·운영</p> <p>6. ~ 8. (생략)</p>	<p>제6조(전담 조직의 설치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p> <p>1. ~ 4. (제정안과 같음)</p> <p>5. ----- <u>서울특별시</u> <u>자원통합관리센터</u>----- -----</p> <p>6. ~ 8. (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 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
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
4. “자체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체비축창고를 말한다.
5. “개별비축창고”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치구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시장은 자치구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조정한다.

제5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담 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란 한다)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

4.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7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의 장이 된다.

② 시장은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①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전담 조직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대행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 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
2.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 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지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

가. 중앙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내 자치구

다.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4. 시의 지형적 특성

5. 시에 거주하는 인구수

6. 그 밖에 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